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술 발전에 따른 확장 사무를 모두 소관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담당관의 명칭을 정보통신기술담당관으로 변경하면서 소관 사무를 정비하고, 인권보호 사무의 중요성을 반영하여 시도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을 청문감사인권담당관으로, 경찰서 청문감사관을 청문감사인권관으로 개편하며, 벤처형조직인 치안빅데이터정책담당관의 존속기한을 2022년 7월 31일까지 연장하는 한편, 행정구역 변경에 따라 창원중부경찰서 관할을 정비하고, 청사이전 및 행정구역명 변경에 따른 일부 경찰서의 위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2021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제3항 및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보통신담당관”을 각각 “정보통신기술담당관”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경찰 정보통신 기반 운영 및 관련 정책의 수립·시행
2. 경찰 정보통신기술의 도입·지원 및 표준화에 관한 사항
3. 경찰 정보시스템 운영 및 관련 정책의 수립·시행

제31조제1항 중 “청문감사담당관”을 “청문감사인권담당관”으로 한다.

제33조의 제목 “(청문감사담당관)”을 “(청문감사인권담당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청문감사담당관”을 각각 “청문감사인권담당관”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경찰 직무수행과정상의 인권 보호 및 개선에 관한 사항
6. 소속 경찰기관 공무원(의무경찰을 포함한다)의 인권침해 사항에 대한 상담·조사 및 처리

제50조제5항 본문 중 “청문감사담당관”을 “청문감사인권담당관”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청문감사담당관”을 “청문감사인권담당관”으로 한다.

제52조의 제목 “(청문감사담당관)”을 “(청문감사인권담당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청문감사담당관은 청문·감사”를 “청문감사인권담당관은 청문·감사·인권보호”로 한다.

제74조제1항 본문 중 “청문감사관”을 “청문감사인권관”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중 “청문감사관”을 각각 “청문감사인권관”으로, 같은 항 중 “감찰업무”를 “감찰·인권보호업무”로 한다.

제75조제2항 중 “청문감사관”을 “청문감사인권관”으로 한다.

행정안전부령 제230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전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1항 중 “2021년 7월 31일”을 “2022년 7월 31일”로 하고, 부칙 제3조제2항 중 “2021년 7월 31일”을 “2022년 7월 31일”로 한다.

별표 2 경상북도 경찰청의 경상북도 구미경찰서의 위치란 중 “송원동로 11-4”를 “구미대로 350-19”로 하고, 같은 표 김천경찰서의 위치란 중 “김천로 164”를 “혁신8로 8”로 하며, 같은 표 고령경찰서의 위치란 중 “고령읍”을 “대가야읍”으로 하고, 같은 표 경상남도 경찰청의 창원중부경찰서의 관할구역란 중 “대원동, 덕정동, 두대동, 반송동, 사림동, 삼동동, 신월동, 용동, 용지동, 용호동, 퇴촌동”을 “사림동, 용동”으로 한다.

별표 11의 제목 중 “청문감사관을 두지 않는 경찰서표”를 “청문감사인권관을 두지 않는 경찰서표”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6조(정보화장비정책관) ① (생략)	제6조(정보화장비정책관) ① (현행과 같음)
② 정보화장비정책관 밑에 정보화장비기획담당관, <u>정보통신담당관</u> 및 장비담당관 각 1명을 둔다.	② ----- ----- <u>정보통신기술담당관</u> ----- -----.
③ 정보화장비기획담당관 및 장비담당관은 총경으로 보하고, <u>정보통신담당관</u> 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총경으로 보한다.	③ ----- ----- <u>정보통신기술담당관</u> ----- ----- -----.
④ (생략)	④ (현행과 같음)
⑤ <u>정보통신담당관</u> 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정보화장비정책관을 보좌한다.	⑤ <u>정보통신기술담당관</u> ----- ----- -----.
1. <u>정보통신망의 운영·유지 및 보수 업무</u>	1. <u>경찰 정보통신 기반 운영 및 관련 정책의 수립·시행</u>
2. <u>경찰 무선망의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업무</u>	2. <u>경찰 정보통신기술의 도입·지원 및 표준화에 관한 사항</u>
3. <u>정보통신 관련 프로그램의 연구·개발</u>	3. <u>경찰 정보시스템 운영 및 관련 정책의 수립·시행</u>
⑥ (생략)	⑥ (현행과 같음)
제31조(서울특별시경찰청에 두는 담당관 및 직할대) ① 서울특별	제31조(서울특별시경찰청에 두는 담당관 및 직할대) ① -----

시경찰청장(이하 이 절에서 “서울경찰청장”이라 한다) 밑에 홍보담당관·청문감사담당관 및 112치안종합상황실장 각 1명을 둔다.

②·③ (생략)

제33조(청문감사담당관) ① 청문감사담당관은 총경으로 보한다.

② 청문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서울경찰청장을 보좌한다.

1. ~ 4. (생략)

<신설>

<신설>

5. (생략)

제50조(하부조직) ① ~ ④ (생략)

⑤ 시·도경찰청장 밑에 홍보담당관·청문감사담당관 및 112치안종합상황실장 각 1명을 두고, 부산광역시·대구광역시·인천광역시·광주광역시·대전

-----청문감사인권담당관-----

-----.

②·③ (현행과 같음)

제33조(청문감사인권담당관) ① 청문감사인권담당관-----.

② 청문감사인권담당관-----

-----.

1. ~ 4. (현행과 같음)

5. 경찰 직무수행과정상의 인권보호 및 개선에 관한 사항

6. 소속 경찰기관 공무원(의무경찰을 포함한다)의 인권침해 사항에 대한 상담·조사 및 처리

7. (현행 제5호와 같음)

제50조(하부조직)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청문감사인권담당관-----

광역시·경기도남부·경기도북부·충청남도·전라남도·경상북도·경상남도의 시·도경찰청 수사부장 밑에 수사심사담당관 1명을 둔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의 청문감사담당관 및 112치안종합상황실장은 차장 밑에 둔다.

⑥ ~ ⑧ (생략)

제52조(청문감사담당관) 청문감사담당관은 청문·감사 및 민원 업무에 관하여 시·도경찰청장을 보좌한다.

제74조(하부조직) ① 경찰서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경찰서에 청문감사관·112치안종합상황실 및 5과(경무과·정보안보외사과·수사과·생활안전과 및 경비교통과)를 둔다. 다만, 별표 3의 경찰서에는 정보안보외사과를 갈음하여 공공안녕정보외사과와 안보과를 두고, 별표 4의 경찰서에는 수사과를 갈음하여 수사과와 형사과를 두며, 별표 5의 경찰서에는 수사과를 갈음하여 수사과·형사과 및 수사

-----,
----- 청문감사인권담당관 -----
-----.

⑥ ~ ⑧ (현행과 같음)

제52조(청문감사인권담당관) 청문감사인권담당관은 청문·감사·인권보호 -----
-----.

제74조(하부조직) ① -----

청문감사인권관-----

-----,

안종합상황실장은 경정으로, 2
급지 및 3급지 경찰서의 과장·
청문감사관 및 112치안종합상
황실장은 경정 또는 경감으로
보한다.

③ (생략)

행정안전부령 제230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전부
개정령 부칙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
구의 존속기한) ① 종전의 행정
안전부령 제133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
정령 부칙 제2조에 따른 총액인
건비제로 신설한 치안빅데이터
정책담당관은 2021년 7월 31일
까지 존속한다.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
원의 존속기한) ① (생략)
② 종전의 행정안전부령 제133
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3
조에 따른 총액인건비제로 증원
한 정원으로서 별표 14(종전의
별표 8의2)의 정원 2명(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1명, 전산사무

청문감사인권관 -----

-----.

③ (현행과 같음)

행정안전부령 제230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전부
개정령 부칙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
구의 존속기한) ① -----

----- 2022년 7월 31일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
원의 존속기한) ① (현행과 같음)
② -----

관 또는 통계사무관 1명)은 <u>2021</u> <u>년 7월 31일</u> 까지 존속한다.	----- <u>2022</u> <u>년 7월 31일</u> -----
---	--

< 의안 소관 부서명 >

경찰청 혁신기획조정담당관	
연 락 처	(02) 3150 - 1157